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-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-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 - 제출일자 : 2010년 5월 25일
 - 회부일자 : 201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2010. 7. 1.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필요한 명칭과 정원을 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을 변경(안 제2조)
 -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 변경 및 정원의 총수를 정함(안 제2조제1호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⇒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제17 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: 7명
 - 본청,지역교육청,직속기관,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 2,905명 ⇒ 2,911명(안 제2조제2호)

-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추가(안 제4조)
 - 충청북도의회 사무처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
 -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(7명)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
- 다른 조례의 개정
 -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개정(13명⇒7명)

5. 검토의견

- O 본 조례안은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따라 2010. 7. 1.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조직 명칭과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O 주요내용은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**총수는** 2.918명으로 변함이 없으며,
 - 정원관리 단위기관 명칭과 정원을 종전의 <u>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</u> 국에서 <u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</u> 의회 사무처: 7명으로 변경 및 명시하고,
 - 본청,지역교육청,직속기관,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

2,905명에서 2,911명으로 6명 증원하였음.

- 또한, 정원관리 단위기관에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를 추가 명시하였고,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로 2010년 8월 31일 까지 정원(7명)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, 이 조례 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의 정수를 13명에서 7명으로 변경한 것으로,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안 제2조제1호의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7명과, 교육위원회 의사 국 정원 7명의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임: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타 시·도교육청 및 충청북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자치법규 제정 비교

2010.5.11.현재

| 교육청별 | 제 명 | 제정일자 | 공익신고자 | 지급한도액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 |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| ′10.04.15. | 내부직원 일반시민 | 1억원 | 위원회 : 7명 ※ '09.7. 철회이후 재추진 |
| 부산 |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| '05.10.15. '10.05.19. 개정공포 | 내부직원 일반시민 (개정안) | 5천만원 (개정안) | 위원회 : 7명 (개정안) |
| 대구 | 대구광역시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| ′09.12.29. | 내부직원 | 3천만원 | 위원회 : 5~7명 ※조례로 변경 예정 |
| 인천 |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| ′09.02.23. | 내부직원 일반시민 | 3천만원 | 위원회 : 7명 |
| 대전 |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조례 | ′07.06.14. | 내부직원 | 3천만원 | 위원회 : 5~7명 |
| 울산 | | | | | 행동강령(규칙) 개정 추진 |
| 광주 |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| '10.05.10. 교위부의 | 내부직원 일반시민 | 5천만원 | 위원회 :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포함 운영 |
| 강원 | | | | | 행동강령(규칙) |
| 경기 |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| '10.04.27. 입법예고 완료 | 내부직원 일반도민 | 5천만원 | 위원회 : 7명 '08.10.제정 규칙 폐지 |
| 충북 |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| '10.05.17. 교위부의 | 내부직원 일반도민 | 3천만원 | 위원회 : 7명 |
| 충남 | | | | | 추진 준비 중 |
| 전북 | | | | | 추진 준비 중 |
| 전남 | | | | | 추진 준비 중 |
| 경북 | 경상북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| ′10.05.공포 예정 | 내부직원 | 3천만원 | 위원회 : 7명 |
| 경남 |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| '10.04.22. 입법예고 | 내부직원 일반도민 | 3천만원 | 위원회 : 7명 |
| 제주 |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내부공익 신고에 관한 규칙 | ′09.05.06. | 내부직원 | 1천만원 | 위원회 : 7명 |
| 충청북도 (일반회계 | 충청북도 내부 공직부패신고 보상규정 | ′08.02.01. | 내부직원 | 1천만원 | 위원회 인원 규정 없음(위원회는 구성 |

3. 시·도교육청별 지급기준 비교

| 신고유형 (지급대상) | 우리 교육청 조례(안) | 서울 | 부산 | 대구 | 인천 | 대전 | 광주 | 경기 | 경북 | 경남 | 제주 | 충청 북도 | 비고 |
|--|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 ·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·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| | 동일 | 동일 | 20배 이내 | 20배 | 동일 | 동일, 1천만원 이내 | 동일 | 동일 | 동일 | 동일 | 동일 | |
|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| · 추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·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,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| 동일 | 동일 | 30 퍼센트 이내 | 됳 | 동일 | 10 퍼센트 이내, 5천만원 이내 | 동일 | 10 째트 이내 | 동일 | 30 퍼센트, 부당 등 300만원 이내 | 당 | |
|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| · 알선 · 청탁의 대가인 · 금품 수수액, 개인별 금품 · 향응 수수액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| - | 5배 이내 | 20배 이내 | 20배 | 동일 | 동일, 1천만원 이내 | 3백 만원 | 동일 | 동일 | 동일 | 동일 | |
|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 청탁 행위 | · 알선 · 청탁 행위 신고 · 3백만원 이내 | 동일 | 동일 | 200만원 이내 | 200면 이내 | 1천원 이내 | 동일 | 이내 | 동일 | 동일 | 동일 | 2백원 아내 | |